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입소 정원 및 모집방법]

- 1) 입소정원 : 시설의 입소정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필증의 인가정원(29인)으로 한다.
- 2) 모집방법 : 입소자 모집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온라인, 달력제작,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모집한다.

나.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1) 이용 계약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입소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정한다.
- 3)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 기간을 연장하고 수가변동 및 갱신 시는 필요사항만을 규정하여 안내문으로 갈음한다.
-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별표3>과 같이 한다.

다. [입소 이용 비용에 관한 사항]

- 1) 이용자의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한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금으로 하여 비급여인 식사재료비에 대한 비용은 시설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이용료의 변경은 당해년도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따른다. <별표 1> 참조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대상으로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비급여로 징수하도록 한다.

가) 식사재료비 : 1회 2,000원(물가 상승으로 부득이하게 인상해야될 경우 안내문으로 갈음한다)

나) 간식비 : 1회 500원

다) 팬티형 기저귀(수급자의 요구에 의한 물품일 경우) : 실비 또는 보호자가 직접 구입

라) 비급여대상자 (등외 입소자)의 비용은 공단 산정에 따라 100%로 한다.

라.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최소 14일 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1)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항목을 변경할 경우.

나) 매년 장기요양 수가 변동이 있을 경우.

3.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4.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 실시 → 보호자 상담 → 안내문으로 갈음함
-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안내문으로 갈음함
- 3. 기관의 사정에 의한 변경이 아닌 보건복지부와 수급자 사이에 발생한 급여변경 내역을 이용료에 반영함으로 재계약이 아닌 『장기요양수가변경 안내문』으로 갈음한다.

마. [서비스제공자,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 간의 권리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가)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 나)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다)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 다)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마)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 가)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나)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 다) 시설 내, 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라)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을 받을 권리
- 마) 시설 내, 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바)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 사)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 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바.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수급자 노인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라) 기관 이용 어르신의 이용 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가) 계약 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요양 인증서상의 유효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정하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가) 계약의 해지는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나) 기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퇴소 및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퇴소 및 계약 해지시 이용자 의사와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가.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가 퇴소를 요구할 때

(2) 나. 이용자가 기관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의 이유로 이용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다. 직원 및 동료 이용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4)

사. [입소 및 이용 절차]

기관 이용을 희망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하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본 기관과 서비스제공 계약을 맺음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수급자, 기타의료급여 수급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 이용 신청서를 제출 후 지자체장이 본 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보내 줌으로서 서비스제공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아. [입소용 건강진단]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 시에는 반드시 건강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 1회 이상의 건강 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강진단 결과 관리가 필요한 자에게는 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자. [생활실 등의 위생관리]

이용자의 건강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건물 주변을 청결히 하고 생활관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 2) 화장실은 매일 청소하고 소독한다.
- 3) 하절기에는 필히 각 창문마다 방충망을 설치하고 특히 구충·구서에 만전을 기한다.
- 4) 침구와 의류는 세탁하여 깨끗한 것을 제공하고 일광소독 등을 실시한다.
- 5) 위생 관리를 실시한 사항은 반드시 업무일지, 혹은 관련된 위생관리대장에 시행자, 관리자, 확인 등 이를 기록하여 위생관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차. [급식 및 영양 관리]

- 1) 기관장은 이용인에게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균형이 잡힌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여 시행하도록 관리한다.
- 2) 식사제공에 있어서 조리원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감염성 또는 화농성 등의 질환을 가진자로 하여금 식사를 조리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한다.
- 3) 상수도가 아닌 음용수를 사용할 경우 수질 검사를 받도록 한다.

카. [상담관리]

기관은 이용인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 필요시에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상담일지에 그 상담내용과 상담자, 일시 등을 작성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생활보호·생활지도]

- 1) 모든 직원은 이용자의 생활 보호와 지도를 위해 모범적 행동을 보여야 한다.
- 2) 이용인이 주체가 되어 본인의 신변 처리는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훈련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 3) 이용인의 상태에 따라 다양하고, 개별적인 프로그램과 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의 원내 생활이 사회생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재활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파.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 1)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가)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다)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 2)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가)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 나)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다)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라)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3) 시설장은 시설의 전문직업배상 및 영업 배상에 가입한다.
 - 가) 배상 책임 : 대인, 대물 가입 보험의 한도 내
 - 나) 면책범위 :
 - (1) 가. 신체상해, 재물손해 또는 인격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

(2) 나.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 악의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

(3) 다.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과 합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 4)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기관 종사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 혹은 고의를 일으킨 종사자가 일차적으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
- 5) 기관이용자의 부주의 및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하여 기관근무 종사자 및 기관, 기관부속물, 제반 장비 등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해서는 피해를 일으킨 기관이용자가 모든 배상을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 6) 기관이용자가 개인적으로 휴대하거나 소지한 비품, 장비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기관근무자에게 보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휴대하거나 소지하다가 도난, 분실 등을 한 경우 기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 [이용자 면회]

- 1)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보호자의 면회 요청 시 기관은 이용자와 보호자가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2) 보호자는 면회 요청으로 기관을 방문하였을 경우에는 담당직원을 통해 면회를 요청해야 하며 담당자는 면회기록일지에 이를 기록하도록 한다.

거. [이용자 신상기록관리]

- 1) 기관장은 입소가 결정된 생활자에 대해서 다음의 신상기록을 요하는 서류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가) 신상기록카드
 - 나) 이용자명부
- 2) 기관장은 관할 행정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의 작성보관 중인 서류의 열람, 제출 등을 하도록 한다.

너. [이용자의 서비스 내용]

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 1) 상담 서비스 : 어르신 정기상담 및 가족 상담
- 2) 건강관리 프로그램 : 건강 체크, 건강 체조, 발 마사지, 스트레칭 등
- 3) 기능회복 서비스 : 신체활동, 일상생활, 기능회복 훈련 서비스
- 4) 심리 사회적 기능증진 서비스 : 영화감상,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등
- 5) 특별행사 프로그램 : 합동 생신 잔치, 설(추석) 명절 행사, 어버이날 행사, 등
- 6) 급식 서비스 : 영양사의 식단에 따른 식사제공 및 간식제공
- 7)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 세면 도움, 구강 관리, 식사 도움, 옷 갈아 입히기 등
- 8) 위생관리 서비스 : 손, 발톱 위생관리, 목욕 서비스, 이/ 미용 서비스

더. [이용료 청구]

- 1)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한 금액을 익월 초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청구한다.

- 2)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1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계약 기간 중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경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이용 어르신의 서비스 내용변경 등의 자격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 한 날로 이용계약을 다시 작성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기관에 즉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러. [이용료 납부 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입소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입소자의 입소가 확정될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10일까지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농협 355-9932-3208-93** 또는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CMS자동이체를 이용할 수 있다.
- ②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 ③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에 따른 실비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서비스 기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가)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나)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 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동의를 얻고 동의서에 서명날인 받는다.
 - 라)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 마)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1인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단, 방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 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흡인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나)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다)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본인이나 가족에게 방을 옮기

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라)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버.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 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가)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나)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 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간호(조무)사는 이용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가)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나)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다)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이용자의 건강 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 상담을 실시하며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 부담의 치료비는 기 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 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나.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다. 병원 진료에 필요한 이용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 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나.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하며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

가 부담한다.

(2)

4)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할 수 있다.

나)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서. [노인학대 예방]

1)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하며 신고의무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누구든지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시설의 장 및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가.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2) 나.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다.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 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시설의 장은 직원이 노인 학대를 행하였다면 지체없이 업무를 중지시켜야 하며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설의 장 등 신고 접수자는 응급조치의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노인 학대 신고를 접수한 시설의 장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 행위자로 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다) 시설의 장은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마)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바) 기타 노인학대의 유형은 노인학대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 및 관련 법령을 참조한다.

4) 학대 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5) 시설의 장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급자와 직원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025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2024년도 대비 평균3.93%인상(인력 2.1:1)

1) 노인요양시설 1일당 수가 (단위: 원)

인력 : 2.1:1

등급	2024년 수가	2025년 수가	2025년 본인부담금 (20%)
1등급	84,240	90,450	18,090
2등급	78,150	83,910	16,780
3~5등급	73,800	79,240	15,840

2)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계약사항 (단위:원)

구분		본인부담금(30일기준)			
		2024년	2025년 일반(20%)	2025년 경감(12%)	2025년 경감(8%)
본인 부담금	1등급	505,440	542,700	325,620	217,080
	2등급	468,900	503,460	302,076	201,384
	3~5등급	442,800	475,440	285,264	190,176
비급여	식재료비 (간식포함)	식재료비: 1일 1식 2,000원*3=6,000원, 간식: 오전,오후*500원=1,000원 7,000원*30일=210,000원			
합계	1등급	715,440	752,700	535,620	427,080
	2등급	678,900	713,460	512,076	411,384
	3~5등급	652,800	685,440	495,264	400,176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본인부담금: 30일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변동없음)

※ 계약의 진료비 : 일반 - 초진 3,680원 재진 2,630원

12% - 초진 2,200원 재진 1,570원

8% - 초진 1,470원 재진 1,050원

인 덕 요 양 원